

다문화 사회와 경찰활동

-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간의 갈등에 대한 고찰 -

Policing in Multi-Cultural Society

- Review on Relations between
American Police and Minority Communities -

라 광 현*

차 례

I. 서론: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경찰활동	III. 미국 내 다문화 관련 경찰활동 및 시사점
II.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간의 관계	IV. 결 론

• 국 문 요 약 •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경찰 활동 등 한국 사회의 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학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는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갈등의 원천을 분석하여, 다문화 사회를 맞고 있는 한국의 경찰 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및 외래 문화권 이주자 간 갈등의 주요 원천은 경찰의 차별적인 법집행에 있다. 경찰의 소수인종 및 이민자들에 대한 과잉 법

집행과 불충분한 보호는 이들이 폭력적인 하위문화를 받아들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미국 경찰은 소수인종의 채용을 증가시키고 소수인종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경찰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위해 외국인/이주민 대상 범죄 피해 지원 강화, 외국인/이주민 대상 지역사회 경찰활동 도입, 경찰 인력 및 장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다문화 사회와 경찰활동, 미국 경찰, 지역사회 경찰활동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박사수료.

I. 서론: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경찰활동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학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¹⁾ 저출산율의 경우, 한국의 상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으로서,²⁾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 혹은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찾기 힘든 편이다. 다만,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경우,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여 다소 늦게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들을 고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동력이 존재한다. 첫째는 국제결혼을 매개로 하는 아시아권 여성들의 유입이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³⁾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15만 여명에 달하며, 이 중 약 13만 명이 여성이다. 두 번째 동인은 취업이나 국내로 이주를 위해 입국하는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들이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약 78만 명의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국적 동포가 65만 여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다.⁴⁾ 셋째는 취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유입이다. 출입국 외국인

1) 설동훈 외,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09, 119-123쪽.; 최선우,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와 경찰의 대응", 한국경찰학회보, 제25호, 2010, 38-39쪽.

2)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제 수립 연구, 2003, 108-109쪽.

3) 법무부,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 50-52쪽.

4) 법무부, 앞의 보고서, 2017, 68-70쪽.

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184만 명의 합법체류자와 21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⁵⁾ 이 수치는 앞서 설명한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것으로,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 및 경찰 실무의 대응은 주로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아시아권 여성들의 보호 방안⁶⁾ 및 조선족 및 외국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⁷⁾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의 경우, 2013년도부터 특정 범죄 피해에 대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처우는 경찰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⁸⁾, 연구자들과 경찰 실무에서 혼인이주 여성 등을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혁신적이며 통찰력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이민자 등 외래 문화권으로부터 이주한 거주자들 및 공식 범죄율이 높은 소수 인종 사회에 대한 법집행 강화는 서구 선진국들 역시 채택하고 있는 경찰의 일반적인 다문화 사회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다.⁹⁾ 하지만,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는 미국 사회의

5) 법무부, 앞의 보고서, 2017, 76쪽.

6) 김윤영·김정규,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 제주지역을 표본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2013.; 박진희,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방안-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33호, 2012.; 윤경희, “경찰의 다문화가정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지원 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제4권 제2호, 2009.

7)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2008.

8) 류경희, “경찰의 범죄 피해자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실무 현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5, 136쪽.

9) Shusta 외, *Multicultural law enforcement: Strategies for peacekeeping in a*

경우,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적이며 강력한 법집행은 오히려 범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¹⁰⁾ 이에 이 연구는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갈등의 원천을 분석하여, 다문화 사회를 맞고 있는 한국의 경찰 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간의 관계

1. 역사적 배경

사무엘 워커(Samuel Walker)는 미국 법집행 역사를 관통하는 특징을 “대중에 의한 사법(Popular Justice)”이라고 요약한다.¹¹⁾ 대중에 의한 사법이란 다시 말하여, 법집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다수의 가치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민주적인 법집행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치적인 다수에 의하여 소수를 핍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¹²⁾ 미국 역사에 있어서 유럽계 백인이 정치적인 다수의 위치를

diverse society.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2008.; Walker, S, *Popular justice: A history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0) Edwards, E 외, *The War on Marijuana in Black and Whit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New York, NY, 2013.; Fagan, J., and Meares, T. L. “Punishment, deterrence and social control: The paradox of punishment in minority communities”.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6, 173-229, 2008, p. 173.

11) Walker, 앞의 책, 1998, pp. 5-7.

12) Walker, 위의 책, 1998.; Bobo, L. D. and Thompson, V, “Unfair by design: The war on drugs, race, and the legitima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빼앗긴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중에 의한 사범이라는 개념은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간의 갈등을 논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대륙에서 법집행 기관과 소수 인종 간 갈등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버지니아(Virginia), 조지아(Georgia) 등의 주에서는 일찍이 15세기 무렵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근거 법률을 갖춘 노예 감시대(slave patrol)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미국 남부지역 근대 경찰의 한 원류라고 여겨지고 있다.¹³⁾ 노예 감시대의 주요한 임무는 탈주 흑인 노예들을 체포하고 흑인의 저항을 방지하는 데 있었으나, 노예 감시대를 비롯한 당시 형벌제도의 가혹한 처우는 오히려 흑인들의 저항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¹⁴⁾ 이러한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갈등 관계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흑인의 경우, 최초 미 대륙에 이주한 주요 계기가 노예제도에 있기 때문에 법집행 기관과의 갈등 관계는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집중되었던 아일랜드, 이탈리아, 헝가리, 러시아계 유대인 등 유럽계 이주자들과 경찰 간의 관계 역시 주목할 여지가 있다. 이들은 흑인들과는 달리 모국의 기근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거나 직업의 기회를 위해 대부분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¹⁵⁾ 유럽계 이민자들과 경찰의 관계는 정치적 지형에 따라

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73(2), 2006.; Chesterton, J. P., What I saw in America. 1922. Reprint, Anthem Press, 2008, p.165.

13) Durr, M.,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lave patrols and modern day policing? Institutional Violence in a community of color". *Critical Sociology*, 41(6), 2015.; Reichel, P. L., "Southern slave patrols as a transitional police type". *American Journal of Police*, 7, 1988.

14) Reichel, 앞의 논문, 1988.; Aptheker, H., "American Negro slave revolts". *Science & Society*, 1937, p. 514.

15) Jones, M. A., *American immigr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아일랜드 및 독일계 이민자들은 뉴욕(New York City, NY), 필라델피아(Philadelphia, PA) 등지에서 지역 정치를 장악하면서 경찰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게 되었지만,¹⁶⁾ 이 주 초기에 이들은 일찍 이주해 온 영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영향을 받았던 경찰에 의하여 탄압을 받고 이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미국 소수 인종 및 이민자들의 저항 및 시위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근대 이후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집회, 시위 및 봉기는 독재 정권 혹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불신 및 갈등이 원인이 되는데 반하여, 미국 소수 인종들의 시위 및 봉기는 법집행 기관의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⁷⁾ 오늘날의 경우에도, 미국 정부는 가장 민주적인 정부 중의 하나이지만, 법집행 기관의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은 소수 인종의 시위 및 봉기로 이어지고 있다. 1992년의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 사태¹⁸⁾, 2001년의 신시내티(Cincinnati, OH) 사태¹⁹⁾, 2014년의 퍼거슨(Ferguson, MO) 사

Dolan, J. P., *The Irish Americans: A History*. Bloomsbury Publishing USA, 2010, pp. 79-80.

16) Walker, 앞의 책, 1988, p. 56.

17) Walker, 앞의 책, 1988, pp.195-199.

18) 과속으로 단속된 흑인 남성 Rodney King을 백인 경찰관 4인이 집단 구타한 비디오가 공개되고, 이들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발생한 흑인 및 히스패닉 소요 사태로, 60여 명이 사망하고, 1만 2천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Harris, P. *Black Rage Confronts the Law*, NYU Press, 1997, p. 186.

19) 2001년 4월, Timothy Thomas라는 당시 19세의 비무장 흑인을 백인 경찰이 등 뒤에서 총격한 이후 발생한 소요사태로, 4명이 부상당하고,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으로 150여 명, 통행금지 위반(Curfew)으로 800여 명이 체포되었다.: Waddington, D., *Policing Public Disorder.*, Routledge, 2013, pp. 64-68.

태 이후 볼티모어(Baltimore, MD) 등 미국 전역의 소요사태²⁰⁾ 등은 경찰과 소수 인종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2. 경찰의 소수인종 및 외래 문화권 이주자 차별의 양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및 외래 문화권 이주자 간 갈등의 주요 원천은 경찰의 차별적인 법집행에 있다. 연구자에 따라 과거보다는 경찰의 차별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²¹⁾ 차별이 더욱 내재화되었고 직관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워 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²²⁾ 경찰의 소수 인종 및 외래 문화권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의 유형은 크게 과잉 법집행(over-enforcement)과 불충분한 보호(under-protection)로 구분 할 수 있다.

1) 과잉 법집행(over-enforcement)

소수 인종 및 이민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법집행은 가장 대표적인 차별의 유형이며 경찰-시민 간 갈등의 원인이다. 소수 인종에 대한 과잉

20) 2014년 8월 Michael Brown이 백인 경찰관에게 총격을 받고 숨진 이후 소요 사태로서, 이 사건은 다른 지역의 흑인 소요사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피거슨의 경우, 소요사태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였으며, 300여 명이 체포되었다.: Keating, D. 외, "A breakdown of the arrests in Ferguson," The Washington Post, 2013.8.22.; St. Louise Today, "More than 50 arrested at Ferguson police station on 'Moral Monday,' other events elsewhere," 2014.10.13.

21) MacDonald, H., Are cops racist?. Rowman & Littlefield, 2003.; MacDonald, H., The war on cops: *How the new attack on law and order makes everyone less safe*. Encounter Books, 2017.

22) Bobo and Thompson, 앞의 논문, 2006.; Chesterton, 앞의 책, 2008, p.165.

법집행은 경찰의 검문검색을 및 체포율의 차이 등을 통해 확인되며 (Edwards, Bunting, & Garcia, 2013; Harris, 1997; Fagan 외, 2009), “흑인으로서 운전하기(driving while black)”, “갈색 피부를 가진 채로 운전하기(driving while brown)” 등 미국 사회 및 학계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들은 경찰의 인종적인 소수를 향한 차별적인 법집행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²³⁾

물론, 경찰 및 일부 연구자들은 경찰 통계 상 나타나는 소수 인종과 백인 간의 차이(disparity)는 경찰의 차별(discrimination)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인종 간 범죄율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²⁴⁾ 다시 말하여, 소수 인종의 범죄율이 백인 범죄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수 인종의 인구당 체포율(arrest per capita)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종 간 분포율이 비슷한 범죄 유형의 경우에도, 소수 인종의 체포율은 백인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마리화나 사용률(marijuana prevalence)은 백인과 흑인 간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인구당 체포율은 흑인이 3~5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²⁵⁾ 한편, 20세기 초반 제정되었던 금주법 역시 중산층 주류 백인들은 법집행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법집행의 주요 대상은 유럽 이주자 출신의 노동계층이었다.²⁶⁾ 즉, 역사적으로 경찰의 과

23) Harris, D. A., “‘Driving while black’ and all other traffic offenses: the Supreme Court and pretextual traffic stop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7(2), 1997.; Mucchetti, A. E., “Driving while brown: A proposal for ending racial profiling in emerging Latino communities”. *Harvard Latino Law Review*, 8, 2005.

24) MacDonald, 앞의 책, 2003; MacDonald, 앞의 책, 2017.

25) Edwards 외, 앞의 책, 2013, pp. 17-22.

잉 법집행은 단순히 인종적인 소수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
며 문화적인 소수집단에게도 작용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경찰의 소수 인종에 대한 과잉 법집행으로 인하여
소수 인종의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과잉 법집행 그 자체
가 공식 통계 상 소수 인종의 범죄율을 증가시키며, 체포율 증가에 따른
구금율의 증가는 구직 기회의 감소, 가장(family provider)의 상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문제는 다시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
편, Sherman과 Tyler등의 학자들은 과잉 법집행은 소수 인종의 기성사
회에 대한 저항(defiance)을 조장하며,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
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²⁷⁾

즉, 경찰의 입장에서 소수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의 과잉 법집행은 지
역 간 범죄율의 차이로 정당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와는 무
관하게, 과도한 법집행은 소수 인종 사회를 자극하며 법집행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2) 불충분한 보호(under-protection)

일반적으로 미국의 연구자, 언론 및 대중은 경찰의 소수 인종 및 이민
자들에 대한 과잉 법집행 및 총기 등의 물리력 사용(use of force)에 관

26) Chesterton, 앞의 책, 2008, p.165.

27) Fagan and Meares, 앞의 논문, 2008; Sherman, L. W.,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4), 1993.; Tyler, T. R., and Wakslak, C. J.,
"Profiling and police legitimacy: Procedural justice, attributions of motive,
and acceptance of police authority". *Criminology*, 42(2), 2004.; Unnever, J.
D., and Gabbidon S. L., *A theory of African American offending: Race,
racism, and crime*. Taylor & Francis, 2011.

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Anderson과 Brunson 등 흑인 범죄학자들은 경찰의 소수 인종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가 소수 인종이 범죄 신고를 주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적인 “길거리 행동양식(the code of the street)”을 행동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²⁸⁾ 즉, 과잉 법집행으로 인한 경찰 정당성의 약화 및 인종 차별에 의한 반발심과 더불어, 소수 인종에 대한 경찰의 불충분한 보호는 흑인들이 길거리 행동양식을 채택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²⁹⁾

경찰의 소수 인종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는 사건 처리율(clearance rate) 등의 지표 혹은 흑인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찰이 소수인종 주민들의 범죄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³⁰⁾ 백인 가해자-흑인 피해자 사건의 경우 흑인 가해자-백인 피해자 사건보다 사건 처리율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낸다.³¹⁾ 결과적으로 일부 소수인종 주민들은 경찰을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존재보다는 점령군(occupying armies)이라고 여기기 때문에,³²⁾ 이들로부터의 자발적인 법준수나 경찰에 대한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28) Anderson, E., *Code of the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WW Norton & Company, 2000.; Brunson, R. K., and Weitzer, R., “Police relations with black and white youths in different urban neighborhoods”. *Urban Affairs Review*, 44(6), 2009.

29) Anderson, 앞의 책, 2000.

30) Brunson, R. K., and Miller, J., “Young black men and urban policing in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6(4), 2006, pp. 614-615.

31) Stacey, M. 외, “Victim and suspect race and the police clearance of sexual assault”. *Race and Justice*, 2153368716643137, 2016.; Taylor, T. J., 외 “Racial bias in case processing: Does victim race affect police clearance of violent crime incidents?”. *Justice Quarterly*, 26(3), 2009.

32) Anderson, 앞의 책, 2000.; Weitzer, R. and Tuch, S. A., “Racially biased policing: Determinants of citizen perceptions”. *Social Forces*, 83(3), 2005.

3. 경찰-시민 관계 회복을 위한 미국 경찰의 전략

미국에서 경찰과 시민의 관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경찰과 소수 인종 사회와의 관계를 지칭한다. 역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시민들과 경찰의 관계에는 무관심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전의 경찰은 소수 인종과의 관계 회복에 비자발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를 전후하여 법원에 의해 강제된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혹은 평등 고용제도(Equal Opportunity) 등을 통해 경찰 인력에서 소수 인종 대표성을 증가시키려는 제도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³³⁾

1990년대를 기점으로 시민의 협력이 치안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각 경찰관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채택하고 경찰-시민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실질적으로 경찰과 시민들 간의 치안 유지를 위한 협력을 증진시켰으나, 도시에 거주하는 소수 인종 혹은 소수 민족 간의 관계 개선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⁴⁾

경찰과 시민의 관계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화두는 Tyler의 절차적 정의 이론(Procedural Justice Theory)에 근거한 경찰 정당성(police legitimacy)

33) Lewis, W. G., "Toward representative bureaucracy: Blacks in city police organizations 1975-1985".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89.; Walker, S., "Racial minority and female employment in policing: The implications of "glacial" change". *NPPA Journal*, 31(4), 1985.

34) Walker, S., and Katz, C. M., *Police in American*. McGraw-Hill, 2012, p. 324, pp. 327-328.

이다.³⁵⁾ 경찰의 법집행 절차가 공평하다고 생각 할 때, 시민들은 법집행이 정당하다고 여기며, 법집행의 정당성은 자발적인 시민의 협력과 법준수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발적인 협력과 법준수는 경찰의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법집행의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경찰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공유(shared values)하는 것이다.³⁶⁾ 즉, 경찰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호해 줄 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경찰에 협력하며 법을 준수한다.

기존 미국의 경찰활동이 다수의 가치에 따른 편향적인 법집행 행태를 보였다는 평가를 고려 할 때,³⁷⁾ 최근의 법집행 정당성에 대한 강조는, 경찰활동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경찰이 적극적으로 소수 인종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보호할 때, 소수 인종 시민들은 더욱 자발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경찰에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경험연구들은, 시민들이 경찰의 법집행 절차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법집행의 정당성을 높게 인식하며, 이는 다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준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³⁸⁾ 다만, 아직까지는 이 이론을 어

35) Tyler, T. R., *Why people obey the law: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complia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0.; Tyler, T. R.,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ule of law". *Crime and Justice*, 30, 2003.

36) Bottoms, A. and Tankebe, J., "Beyond procedural justice: A dialogic approach to legitimacy in criminal justic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012.

37) Bobo and Thompson, 앞의 논문, 2006; Walker, 앞의 책, 1998.

38) Gau, J. M. and Brunson, R. K., "Procedural justice and order maintenance policing: A study of inner-city young men's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Justice Quarterly*, 27(2), 2010.; Reisig 외,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finement of process-based policing measures". *Criminal Justice and*

떻게 경찰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³⁹⁾

Ⅲ. 미국 내 다문화 관련 경찰활동 및 시사점

1. 외국인/이주민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미국에서 경찰의 소수인종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는 소수인종이 자기 방어를 위해 폭력적인 하위문화 혹은 길거리 행동양식을 행동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⁴⁰⁾ 다시 말하여, 미국 도심에 거주하는 소수인종이 폭력적인 하위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방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특히 외국인 성인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 지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서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존재한다.⁴¹⁾ 이러한 고정관념은 단순히 왜곡된 이미지 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경찰이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외국인 혹은 이주민 남성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서만 대할 경우, 이들이 폭력적인 문화를 유지 혹은 개발하는

Behavior, 34(8), 2007.; Tyler, 앞의 책, 1990.

39) Nagin, D. S. and Telep, C. W., "Procedural justice and legal compliance".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017.

40) Anderson, 앞의 책, 2000.; Brunson and Miller, 앞의 논문, 2006.

41) 박상조·박승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60권 제3호, 2016.; 전영평·한승주,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한국행정연구*, 제15권 제2호, 2006.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김정규⁴²⁾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차별 경험이 범죄행위 가능성 및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밝혀냈다. 따라서 경찰은 기존에 강조되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주민들 또한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13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⁴³⁾을 근거로 이미 추진되는 특정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은 자신들과 접촉하는 외국인의 체류 신분을 가해자 및 피해자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연방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외국

42) 김정규,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5, 326쪽.

43)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2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의 체류 신분은 연방 정부의 소관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가해자 및 피해자를 포함하는 경찰의 통보의무 면제는 다소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살인, 상해 및 폭행, 체포 감금, 강간, 성매매 피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통보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의 유형을 모든 범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넘어,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의 통보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예를 들어, 재산 범죄 혹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범죄) 피해를 복구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어, 개인적인 원한으로 보복하는 범죄(street justice) 등을 방지할 수 있다.

2. 외국인/이주민 대상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

1) 미국의 외국인 및 이주민 대상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미국 경찰은 외국인/이주민 밀집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 경찰의 경우, 이민자 사회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범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선행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⁴⁴⁾ 또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히스패닉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력의 고용과 더불어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들이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⁴⁵⁾

44) Khashu, A. 외, *Building strong police-immigrant community relations: Lessons from a New York City project*. New York, NY: Vera Institute of Justice, 2005.

45) Walker, S. 외, *Police outreach to the Hispanic/Latino community: A survey of programs and activities*. Omaha, NE: A Report by the Police Professionalism

미국 경찰이 우범 지역, 노숙자 및 성소수자 등에 대한 지역사회 경찰 활동 강화하고 있는 것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졌던 집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경찰에 정책적 함의가 있다. 미국 휴스턴 경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범집단으로 알려져 있는 노숙자들에 대한 관계 강화를 통하여 노숙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⁴⁶⁾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의 경우, 2009년 우범지역에서의 도보순찰 실험 결과 도보순찰 일반적인 차량순찰보다 범죄율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하고,⁴⁷⁾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도심 우범지대에 대한 경찰의 도보순찰을 강화하였다. 즉, 경찰은 기존에 우범지역 혹은 우범집단이라고 알려진 지역이나 집단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및 이주민 대상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선방안

한국의 경우도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외국인 및 이주민 밀집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및 이주민 밀집 지역에 대한 경찰활동은 특히 외국인 및 이주민 간 발

Initiative,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and the National Latino Police Officers Association, 2002.

46) Wuenschel, P. C., "Houston homeless street outreach".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4(4), 1997.

47) Ratcliffe 위, "The Philadelphia foot patrol experimen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police patrol effectiveness in violent crime hotspots". *Criminology*, 49(3), 2011, pp. 809-814.

생하는 가해 및 피해 그리고 내국인 가해자에 의한 외국인/이주민 범죄 피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외국인/이주민 가해자에 의한 내국인 피해 범죄에 비하여 경찰의 인지가 어렵다. 이를 방지할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이주민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폭력적인 길거리 행동양식(the code of the street)을 채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앞서 제시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러한 제도를 전파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전파 노력 및 외국인/이주민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에 취약한 대상을 노리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행동기를 억제할 수 있다.

3. 경찰 인력의 확충

1)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미국 경찰의 인력 확충 사례

미국의 사례는 다문화사회에서의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 및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경찰의 경우, 1990년 이전까지는 경찰 내 소수 인종의 비율이 15%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2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⁴⁸⁾ 특히, 이 기간 동안 히스패닉과 흑인을 제외한 아시아인 및 기타 소수계 경찰은 약 네 배 가량 증가하였다.

48) Reaves, B. A., Local Police Departments, 2013: Personnel, Policies, and Practic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5, p.5.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경찰 인력에서의 지역사회 대표성 확보를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 경찰은 소수 인종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복수언어 사용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구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⁴⁹⁾

2) 경찰 인력 관련 한국 경찰의 개선방안

한 일간지의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⁵⁰⁾ 49개 시·군·구에 1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경기 안산 단원구의 원곡본동 등 7개 읍면동에는 거주자의 50% 이상이 외국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을 주류로 하는 지역사회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사회에서 경찰이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및 이민자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인/이주민 밀집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문화 및 언어에 익숙한 인력을 충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찰 인력에서의 다양성 개선은 다문화 사회 하에서 법집행의 정당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⁵¹⁾

49) Skogan, W. G., *Community Policing and the New. Justice and safety in America's immigrant communities*, 43, 2006.; Walker 외, 앞의 보고서, 2002.

50) 방준호. “외국인 1만명 넘게 사는 시군구 모두 49곳”. 한겨레신문 2014. 7. 8.

51) Shusta 외, 앞의 책, 2008.

4. 장비의 개선

1)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미국 경찰의 장비 개선 사례

범죄 통제적인 측면에서, 경찰 장비의 개선은 경찰활동의 효율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⁵²⁾ 경찰 장비는 범죄통제와 더불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퍼거슨 사태 이후, 오바마 정부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바디카메라 도입 및 경찰이 사용하는 군사 장비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3년에 걸쳐 총 7천 5백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⁵³⁾

물론 바디카메라가 경찰과 시민의 갈등에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혹은 바디카메라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⁵⁴⁾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디카메라의 사용과 경찰의 물리력 사용(use of force) 및 경찰에 대한 불만 신고(complaint) 간의 영향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⁵⁵⁾ 즉, 아직까지 바디카메라의 효과성이 완전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과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바디카메라 착용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2016년도에 수행된 Pew Research

52) Walker, 앞의 책, 2000, pp. 165-167.

53) Simmons, K. C., "Body-Mounted Police Cameras: A Primer on Police Accountability vs. Privacy". *Howard Law Journal*, 58, 2014, p. 883.

54) Ariel 외., "Wearing body cameras increases assaults against officers and does not reduce police use of force: Results from a global multi-site experiment".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3(6), 2016.; Simmons, 앞의 논문, 2014.

55) Ariel, B. 외., "The effect of police body-worn cameras on use of force and citizens' complaints against the polic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1(3), 2015.; Ariel 외, 앞의 논문, 2016.

Cent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66%가 바디카메라 착용을 선호하며(일선 경찰 65%, 행정 및 관리직 82%), 시민의 93%가 경찰관의 바디카메라 착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시민과 경찰 관리직의 높은 선호도는 바디카메라가 경찰-시민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상장비 관련 한국 경찰의 개선방안

현재에도 한국 경찰은 채증 등을 목적으로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시위 현장 및 교통 단속 상황에서 채증 목적의 영상장비 활용과 비교하여, 바디카메라에는 몇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 바디카메라는 경찰 제복 등에 상시 부착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경찰의 일반적인 출동 상황 및 시민과의 접촉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바디카메라는 캠코더 등의 영상장비에 비하여 작동자의 임의적인 피사체 전환이 어렵다. 이것은 범죄 현장의 채증을 위해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다. 하지만, 바디카메라는 촬영자의 판단을 최소화하여 경찰과 시민의 접촉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시민 간의 접촉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디카메라 도입 목적인 경찰의 책임(police accountability) 강화를 통한 경찰-시민 간의 관계향상을 위해서는, 경찰의 영상장비 활용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⁷⁾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바디카메라의 운영 목적은 채증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은 바디카메라를

56) Morin 외, Behind the Badge, Pew Research Center, 2017, p.14, p.20.

57)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권고 관련.”, 2010. 5.24.; 국가인권위원회,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2014. 4. 9.

일반적인 채증 장비와는 다르게 관리·운영해야한다. 즉, 바디카메라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채증 목적의 영상장비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채증활동규칙」과는 별개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며, 바디카메라를 통한 영상 자료 수집,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IV. 결 론

한국 경찰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앞서 서론에서 간단히 제시하였듯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인구학적 문제이며,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일찍이 경험하고 있는 미국 경찰의 사례를 고찰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내 경찰과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과의 갈등의 역사는 미국 건국 이전 영국 식민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오랜 갈등의 역사를 학자들은 “대중에 의한 사법(popular justice)” 혹은 “설계된 불평등(unfair by design)” 등으로 요약한다.⁵⁸⁾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크게 정치적 소수에 대한 과잉 법집행과 불충분한 보호에 있다. 소수인종 혹은 정치적 소수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은 범죄를 억제하기 보다는 경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반발심을 불러왔다. 과잉 법집행과 더불어, 열악한 경제적 환경과 경찰의 불충분한 보호는 인종적 혹은 정치적 소수자들이 폭력적인 하위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⁵⁹⁾

58) Bobo and Thompson, 앞의 책, 2006.; Walker, 앞의 책, 1998.

59) Anderson, 앞의 책, 2000.

과거 계토 등 소수인종 밀집 지역을 범집행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미국 경찰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 및 소수집단 출신 인력 충원 등을 통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순응이 경찰활동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학계의 이론 및 경험연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경찰정당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를 일찍이 경험한 미국 경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이주민 대상 범 죄 피해 지원, 외국인/이주민 대상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 경찰 인력의 확충 등 다문화 사회에서의 경찰활동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미국 혹은 다른 선진국 경찰의 제도와 프로그램의 도입이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미국 경찰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경찰활동 사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한 예로, 미국 일부 흑인들은 경찰 내의 소수 인종을 백인주류 시스템의 부역자(system operator)로 여기고 있다.⁶⁰⁾ 이러한 점에서 소수 인종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찰-시민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 경찰의 계속되는 도전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경찰이 맞고 있는 사회 환경과 경찰의 자원은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한국 경찰이 외국의 프로그램과 제도를 도입할 때, 한국 사회 및 경찰 자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도입하는 제도들의 문제점들

60) Anderson, 위의 책, 2000.

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한편, 다문화 사회에서의 경찰활동은 학계와 경찰실무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저출산이 미래의 범죄율과 범죄 피해, 그리고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및 실무적인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연령 및 경제 구조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향후의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 현상이 범죄 및 경찰 활동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경찰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인/이주민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경찰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논문 접수 : 2017. 11. 20, 심사 개시 : 2017. 11. 23, 게재 확정 : 2017. 12. 20 〉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법무부,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
설동훈 외,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
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연
구보고서, 2009.

2. 논문

- 김윤영·김정규,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 제주지역을 표본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2013, 23-44쪽.
김정규,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형사정책연구, 26(2), 2015, 305-333쪽.
류경희, “경찰의 범죄 피해자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실무 현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3(1), 2015, 135-160쪽.
박상조·박승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3), 2016, 145-177쪽.
박진희,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방안-심층면접을 중심으
로, 한국경찰학회보, 33, 2012, 149-183쪽.
윤경희, 경찰의 다문화가정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지원 방안 연구, 경찰학
논총, 4(2), 2009, 161-185쪽.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008, 282-332쪽.

전영평 · 한승주,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한국행정연구, 15(2), 2006, 157-184쪽.

최선우,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와 경찰의 대응. 한국경찰학회보, 25, 2010, 37-60쪽.

II. 외국문헌

1. 단행본

Anderson, E., Code of the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WW Norton & Company, 2000.

Chesterton, J. P., What I saw in America. 1922. Reprint. Anthem Press, 2008.

Dolan, J. P., The Irish Americans: A History. Bloomsbury Publishing USA, 2010.

Edwards, E., Bunting, W., & Garcia, L., The War on Marijuana in Black and Whit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New York, NY, 2013.

Harris, P., Black rage confronts the law.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Jones, M. A., American immigr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Khashu, A., Busch, R., Latif, Z., & Levy, F., Building strong police-immigrant community relations: Lessons from a New York City project. New York, NY: Vera Institute of Justice, 2005.

Macdonald, H., Are cops racist?. Rowman & Littlefield, 2003.

MacDonald, H., The war on cops: How the new attack on law and

- order makes everyone less safe. Encounter Books, 2017.
- Reaves, B. A., Local Police Departments, 2013: Personnel, Policies, and Practic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5.
- Shusta, R. M., Levine, D., Wong, H., Olson, A., & Harris, P., Multicultural law enforcement: Strategies for peacekeeping in a diverse society.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2008.
- Tyler, T. R., Why people obey the law: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complia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0.
- Unnever, J. D., & Gabbidon S. L., A theory of African American offending: Race, racism, and crime. Taylor & Francis, 2011.
- Waddington, D., Policing Public Disorder, Routledge, 2013.
- Walker, S., Popular justice: A history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Walker, S., Herbst, L., & Irlbeck, D., Police outreach to the Hispanic/Latino community: A survey of programs and activities. Omaha, NE: A Report by the Police Professionalism Initiative,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and the National Latino Police Officers Association, 2002.
- Walker, S., & Katz, C. M., Police in American, McGraw-Hill, 2012.

2. 논문

- Aptheker, H., American Negro slave revolts. Science & Society, 1937, pp. 512-538.
- Ariel, B., Farrar, W. A., & Sutherland, A., The effect of police body-worn cameras on use of force and citizens' complaints

- against the polic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1(3), 2015, pp. 509-535.
- Ariel, B., Sutherland, A., Henstock, D., Young, J., Drover, P., Sykes, J., ... & Henderson, R., Wearing body cameras increases assaults against officers and does not reduce police use of force: Results from a global multi-site experiment.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3(6), 2016, pp. 744-755.
- Bobo, L. D. & Thompson, V., Unfair by design: The war on drugs, race, and the legitima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73(2), 2006, pp. 445-472.
- Bottoms, A. & Tankebe, J., Beyond procedural justice: A dialogic approach to legitimacy in criminal justic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012, pp. 119-170.
- Brunson, R. K., & Miller, J., Young black men and urban policing in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6(4), 2006, pp. 613-640.
- Brunson, R. K., & Weitzer, R., Police relations with black and white youths in different urban neighborhoods. *Urban Affairs Review*, 44(6), 2009, pp. 858-885.
- Durr, M.,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lave patrols and modern day policing? Institutional Violence in a community of color. *Critical Sociology*, 41(6), 2015, pp. 873-879.
- Fagan, J., & Meares, T. L., Punishment, deterrence and social control: The paradox of punishment in minority communities.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6, 2008, pp. 173-229.
- Gau, J. M. & Brunson, R. K., Procedural justice and order maintenance

- policing: A study of inner-city young men's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Justice Quarterly*, 27(2), 2010, pp. 255-279.
- Harris, D. A., "Driving while black" and all other traffic offenses: the Supreme Court and pretextual traffic stop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7(2), 1997, pp. 544-582.
- Lewis, W. G., Toward representative bureaucracy: Blacks in city police organizations, 1975-1985.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89, pp. 257-268.
- Mucchetti, A. E., Driving while brown: A proposal for ending racial profiling in emerging Latino communities. *Harvard Latino Law Review*, 8, 2005, pp. 1-163.
- Nagin, D. S. & Telep, C. W., Procedural justice and legal compliance.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017.
- Ratcliffe, J. H., Taniguchi, T., Groff, E. R., & Wood, J. D., The Philadelphia foot patrol experimen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police patrol effectiveness in violent crime hotspots. *Criminology*, 49(3), 2011, pp. 795-831.
- Reichel, P. L., Southern slave patrols as a transitional police type. *American Journal of Police*, 7, 1988, p. 51.
- Reisig, M. D., Bratton, J., & Gertz, M. G.,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finement of process-based policing measur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8), 2007, pp. 1005-1028.
- Sherman, L. W.,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4), 1993, pp. 445-473.
- Simmons, K. C., *Body-Mounted Police Cameras: A Primer on Police*

- Accountability vs. Privacy. Howard LJ, 58, 2014, p. 881.
- Skogan, W. G., Community Policing and the New. *Justice and safety in America's immigrant communities*, 43, 2006.
- Stacey, M., Martin, K. H., & Brick, B. T., Victim and suspect race and the police clearance of sexual assault. *Race and Justice*, 2153368716643137, 2016.
- Taylor, T. J., Holleran, D., & Topalli, V., Racial bias in case processing: Does victim race affect police clearance of violent crime incidents?. *Justice Quarterly*, 26(3), 2009, pp. 562-591.
- Tyler, T. R.,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ness rule of law. *Crime and Justice*, 30, 2003, pp. 283-357.
- Tyler, T. R., & Wakslak, C. J., Profiling and police legitimacy: Procedural justice, attributions of motive, and acceptance of police authority. *Criminology*, 42(2), 2004, pp. 253-282.
- Walker, S., Racial minority and female employment in policing: The implications of "glacial" change. *NPPA Journal*, 31(4), 1985, pp. 555-572.
- Weitzer, R. & Tuch, S. A., Racially biased policing: Determinants of citizen perceptions. *Social Forces*, 83(3), 2005, pp. 1009-1030.
- Wuenschel, P. C., Houston homeless street outreach.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4(4), 1997, pp. 69-80.

Ⅲ. 기타자료

- 방준호. "외국인 1만명 넘게 사는 시군구 모두 49곳", *한겨레신문* 2014. 7. 8.

< ABSTRACT >

Policing in Multi-Cultural Society

- Review on Relations between American Police and Minority Communities -

Ra, Kwang-Hyun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and a low birth rate are considered significant demographic issues in South Korea. In this respect, the current study reviews police-minority relations and confliction in America in order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on South Korea police which is facing multi-cultural law enforcement environments. The ultimate source of police-minority conflicts is known to discriminatory law enforcement. In particular, over-enforcement and under-protection of police for racial/ethnic minorities facilitate them to adopt violent subcultures. To enhance the relations, the U.S. police have hired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and adopted community policing for minority neighborhoods. Given the review, the current study suggests several plans for efficient policing in multi-cultural societies: enhancing victim support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proposing community policing for minority communities, adopting equipments for police accountability, and hiring employees from minority populations.

◆ Key Words : Policing in Multi-cultural Society, American Policing, Community Policing